•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·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·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•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·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연수구보

■구정방향■
함께 가꿔요!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723 ☎ 749-7403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람	기 관 의 장

부록 제774호 2013. 10. 28.(월)

【고 시】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3-59호(지적기준점 성과고시) ····· 1
○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3-60호(도로명주소 고시) ····· 3
○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3-61호(도로명주소 고시) ····· 4

【공 고】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도서관공고 제2013-24호(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) ·· 5
○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-743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) ··· 13
○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3-749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안) ····· 24

회람							

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3-59호

지적기준점 성과고시
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10월 23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기준점의 번호	세계측지계좌표		중부좌표		가리좌표		비고
	X	Y	X	Y	X	Y	
1301			436127.52	173449.91			폐기
1305			435911.93	173734.27			폐기
1848					530.71	-14498.43	폐기
1849					461.05	-14552.38	폐기
1850					524.63	-14618.93	폐기
1851					438.64	-14677.75	폐기
1852					436.41	-14733.43	폐기
1853					433.22	-14808.99	폐기
1855					356.21	-14890.52	폐기
1856					314.08	-14795.22	폐기
1857					271.78	-14692.84	폐기
1858					232.38	-14611.87	폐기
1860					237.68	-14429.89	폐기
1861					244.57	-14352.31	폐기
1862					116.84	-14360.03	폐기
1863					13.41	-14345.80	폐기
1864					-64.01	-14340.43	폐기

기준점의 명칭	지적도근점
직각좌표계의 원점명	중부좌표, 가리좌표
토지소재지	인천광역시 선학동, 동춘동
폐기일	2013. 10. 17
표지의 재질	철재

기준점의 번호	세계측지계좌표		중부좌표		가리좌표		비고
	X	Y	X	Y	X	Y	
1866					-264.64	-14411.56	폐기
1867					-350.77	-14478.96	폐기
1868					-327.22	-14512.94	폐기
1869					-240.38	-14587.65	폐기
1870					-185.12	-14661.17	폐기
1871					-126.97	-14754.23	폐기
1872					-12.44	-14797.93	폐기
1873					62.10	-14842.58	폐기
1723					-1774.14	-17930.73	폐기
1724					-1797.02	-17995.14	폐기
1725					-1853.50	-18039.33	폐기
1726					-1882.51	-18019.74	폐기
1727					-1895.88	-17971.11	폐기
1728					-1922.37	-17950.38	폐기
1729					-1970.98	-17935.34	폐기
1730					-2017.40	-17929.49	폐기
1731					-2069.53	-17936.77	폐기
1732					-2134.00	-17932.36	폐기
1733					-2182.57	-17908.54	폐기
1734					-2217.78	-17918.88	폐기
1735					-2269.05	-17916.86	폐기
1736					-2314.04	-17880.74	폐기
702			435835.34	170699.75			좌표변경

기준점의 명칭	지적도근점
직각좌표계의 원점명	중부좌표, 가리좌표
토지소재지	인천광역시 선학동, 동춘동
폐기 및 좌표변경일	2013. 10. 17 2013. 10. 18
표지의 재질	철재

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3-60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10. 28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277 외 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		별 도 열 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749-7594~7595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10. 2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2013. 12. 31.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3-61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10. 28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64번길 2

도로명주소	지번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64번길 2	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52-12	2013-10-28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민원지적과(☎749-7594~5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 공고 제2013-24호

「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0월 22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도서관 시설물 대관시 그 사용료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.

○ 독서회원가입신청서 수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2. 개정 주요내용

○ 도서관 시설물에 관한 사항 수정 (안 제16조, 제17조, 제19조 관련 [별표3]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기준 상세화)

○ 조례 제21조의 [별지 제6호 서식] 독서회원 가입신청서 내용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3년11월

11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**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(참조 : 연수청학도서관장)**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, 법인명,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사항

라. 제출서식

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마. 보내실 곳

○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(청학동 100-15번지)

○ 연 락 처 : 전화 032-749-8254, FAX 032-749-8279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yeonsu.go.kr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신·구조문 대비표

[붙임1] 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"를 "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"로 하며, 같은 조 같은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제17조제1호 중 "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"를 "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, 하늘빛정원 및 그 부대설비"로 한다.

별표 3,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,
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.
별지 제1호 서식의 명칭을 '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'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·수수료(제19조제1항 관련)

1. 시설사용료

시설물명		사용시간	1회 사용료	비 고
공연장	연수어린이 도서관 공연장	주간	40,000원	◦ 전기료 포함 ◦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 사용료 적용 ◦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(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) 주간사용료의 20%씩 가산
	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공연장	야간	50,000원	
	연수청학도서관 공연장	주간	20,000원	
		야간	25,000원	
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독서토론실		주간	무 료	◦ 주 2회,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
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		주·야간	무 료	

※ 비고 1. 공연장은 토·일요일 및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2.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.
3. 주간은 10:00부터 18:00까지로 하며, 야간은 18:00부터 22:00까지로 한다.

2. 수수료

구분	규격	금액	비고
복사기 및 프린터	B5이하	30원	
	A4	40원	
	B4이상	50원	

[별지 제1호 서식]

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 :

단 체 명		성 명 (대 표 자)	
단체의 소재지 (대표자 주소)		전 화 번 호 (휴대전화번호)	- ( )
사 용 시 설			
공연 · 행사명칭			
공연 · 행사내용			
사 용 기 간	. . . ~ . . .	사용인원	명
사 용 료			
비 고	첨부: 1. 행사계획서 2. 기타 필요한 서류(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)		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( )도서관장 귀하

접수번호 :

( )도서관 사용신청 접수증

○ 사용기간 : . . . ~ . . .
○ 사용장소 :
○ 신 청 인 :
○ 주 소 :

위와 같이 ( )도서관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)

[별지 제6호 서식]

독서회원 가입 신청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6">필수사항</td><td colspan="2">발급 도서관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rowspan="3">연령층</td><td rowspan="3">□ 유 아
□ 아 동
□ 청소년
□ 성 인</td><td rowspan="6">반명함판 사진
(3×4cm)
※ 도서관내
사진촬영 가능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2">-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전 화 번 호
(휴대전화번호)</td><td colspan="2">-
( 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 소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가 입 형 태</td><td colspan="4">□ 통합도서서비스 가입 □ 일반회원 가입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선택사항</td><td colspan="2">서비스 가입</td><td colspan="5">□ 가족회원 가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보호자/
대리인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관 계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></td><td>전 화 번 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/table>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공통사항	▪본인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·초본을 제출)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만 14세 미만	▪본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, 위 사항과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·초본을 제출)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
유의 사항

▪연수구립공공도서관의 관계규정(회원관리 규정, 대출규정 등)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▪자료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,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독서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
보호자/대리인 : (서명 또는 인)

연수청학도서관장 귀하

뒷장에 계속↺

통합도서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□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합도서서비스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, 개인식별,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가. 필수항목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(휴대폰번호, 자택전화, 근무지전화), 자택주소
나. 선택항목 : 사용자ID, 비밀번호, 가족ID, E-Mail, 메일수신여부, 휴대폰번호, SMS수신여부, 생일, 자택우편번호, 자택주소, 자택전화, 근무지 우편번호, 근무지 주소, 근무지 전화, 근무처, 부서명, 학교명, 학년, 반, 번호, 제2연락처, 사진
다. 사용 중 생성 항목 : 대출자번호, 성별, 관리구분, 소속코드, 직급코드, 통합회원여부, 실명인증코드, 회원구분, 가입자료실, 우편발송지역, 회원상태, 등록일자, 수정일자, 제적일자, 대출정지일, 대출정지회원사유, 회원증분실여부, 회원증발급횟수, 현재대출책수, 현재연체책수, 총연체료, 누적연체횟수, 누적연체일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가. 보존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 나. 보존기간 : 탈퇴 의사 후 즉시
4.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: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.

□ 민감정보(고유식별정보 등)의 수집 및 이용

1.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및 SMS수신 등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.
2. **만 14세 미만 :** 본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,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및 SMS수신 등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.

□ 동의함

□ 개인정보의 3자 제공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가. 통합도서가입 시 가입도서관에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중앙도서관, 지역대표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 또한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은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.
나. 참여도서관 및 개인정보 제공현황은 통합도서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http://book.nl.go.kr)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제 서비스 이용, 개인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2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이름,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, E-Mail, 생일, 자택우편번호, 자택주소, 자택전화, 근무지우편번호, 근무지주소, 근무지전화, 근무처, 부서명, 학교명, 학년, 반, 번호
3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1.1. 가. 보존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 나. 보존기간 : 탈퇴 의사 후 즉시
4.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: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.

□ 동의함

□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

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법정 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통합도서서비스를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정보공유(제3제공)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.

신청인 : (서명)

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명 : (서명)

연 수 청 학 도 서 관 장

[붙임2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사용허가 등) 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**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**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. 1. 공연장과 부대설비 사용신청시 : 별지 제2호 서식 2. 독서토론실 사용 신청시 : 별지 제2호 서식 ②~④ (생 략)	제16조(사용허가 등) ① ------- ---------- **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. 1. 〈삭제〉 2. 〈삭제〉 ②~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) 도서관 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연수청학도서관 : **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** 2. ~ 3(생략)	제17조(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) 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연수청학도서관 : **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, 하늘빛정원 및 그 부대설비** 2.~3.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3-743호

「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0월 23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, 제17조에 근거

○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용역업무의 체계적 처리 및 적정성을 기하기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(제1조)

2. 개정 주요내용

○ 행정사무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용역결과를 카드 목록화하여 예산, 문제점, 개선방안, 향후계획, 결과, 평가 등을 정리하여 관리(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**2013년11월12일(화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**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【(참조 : 기획예산실장)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☎ 032-749-7096, FAX 032-749-7079, www.yeonsu.go.kr】**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, 법인명,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사항

라. 제출서식

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
- 관련법령 발췌

【붙임 1】

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용역업무의 체계적 처리 및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용역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.

제3조(심의절차)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(이하 "용역부서의 장"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회의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심의 안건을 제출한 용역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.
③ 위원회에서는 해당 용역계획을 심의하고 용역의 가부(可否)를 결정하거나 용역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.
④ 용역부서의 장은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⑤ 기획예산실장은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) ① 기획예산실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.
②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.
1.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
2. 관련법령, 규정, 기준 등의 적합여부
3.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
③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·점검하고 보

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.
1.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
2.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이행 여부
3.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④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⑤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용역사업 수행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⑥ 기획예산실장은 용역부서의 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⑦ 용역부서의 장은 완료 후 자체 평가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· [별지](별지제1호서식)용역과제심의안
· [별지](별지제2호서식)용역과제 심위위원회 심의대장
· [별지](별지제3호서식)용역사업발주보고서
· [별지](별지제4호서식)용역사업완료보고서
· [별지](별지제5호서식)용역업무관리부
· [별지](별지제6호서식)용역사업자체평가서

(별지 제1호 서식)

용역과제 심의안

구 분		주관부서		일련번호	
심의안건					
제안이유					
주요내용	1. 용역개요 2. 용역의 필요성 3. 주요내용(일정별 추진계획, 용역비 산출근거등) 4.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5. 기타사항				
관련법령					
기 타 참고사항					

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

심의 요구자 : 실,과,소,관장,동장 (인)

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

(별지 제2호 서식)

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장

심의번호	심의일자	제출부서	제 목	심의결과	비 고

(별지 제3호 서식)

용 역 사 업 발 주 보 고 서

용역관리번호		용 역 부 서	
용 역 사 업 명			
용 역 발 주 일		용 역 완 료 예 정 일	
용역계약방식			
용역계약금액			
용역수행업체			
용 역 기 간			
기 타 사 항			

(별지 제4호 서식)

용 역 사 업 완 료 보 고 서

용역관리번호		용 역 부 서	
용 역 사 업 명			
용역추진기간			
용 역 완 료 일			
용 역 비 지 출 금 액			
용역추진과정 확인·점검사항			
용 역 성 과 품 내 역			
행 정 자 료 실 성 과 품 보 존 (2 부 이 상)	○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: ○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: ※ 행정자료실 미송부(보관)시에는 사유를 기재		
용 역 결 과 활 용 계 획			

(별지 제5호서식)

용 역 업 무 관 리 부

관리번호	용 역 등 록 관 리			용 역 추 진 관 리					용 역 완 료 관 리			비고
	용역부서	용역사업명	용 역 예정금액	발주일	계약방식	계약금액	용역업체	용역기간	완료일	지출금액	성과품	

(별지 제6호서식)

용 역 사 업 자 체 평 가 서

사업개요	용 역 명					
	사 업 비		용역종류		주관부서	
	내 용					
추진상황	예 산 액		계약액(집행액)			
	수행기관		발주방식			
	용역기간					
	내 용					
평가결과	용역심의					
	용역결과 활용계획					
	문제점 및 개선방안					

【붙임 2】관련법령 발췌

인천광역시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6조(용역결과 관리) ① 구청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·관리하고,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용역의 활용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3-749호

「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3년 10월 25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(안)에 의거 지자체의 일·숙직비를 1일(야)당 50,000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당직근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의2(당직수당) 조항 중 단서조항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. 11. 15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(법인명)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　　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동춘동 923-5번지)

○ 연 락 처 : 전화 749-7164, FAX 749-7159

○ 홈페이지 : http://www.yeonsu.go.kr/

라. 제출서식

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4. 참고자료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

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안

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(당직수당) 조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4조의2(당직수당) ①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인 1회당 50,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일직 및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숙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70,000원으로 한다.	제4조의2(당직수당) ①----------. <단서 조항 삭제>